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 급여 종류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주야간 보호

3. 계약 절차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이 체결

4.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관으로 하며 유효기관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주.야간보호의 정원은 23명이며 ,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0fmf)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상담 후 직접 방문
(3). 기존 수급자 (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홍보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달력)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6).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에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랑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7.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9% 의료,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표4]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 가산

[표5]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 장기요양이용료 비용

■ 장기요양급여종류: 주간보호

◇ 장기요양급여 (8시간이상 10시간이하 기준)

종류	구분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4 등 급	5 등 급	인지지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본 수가	1일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20일	1,394,600	1,291,800	1,192,800	1,160,200	1,127,200	676,320
		24일	1,673,520	1,550,160	1,431,360	1,392,240	1,352,640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일기준)

분 류	내 용	산 출 근 거	금 액 (원)	비 고
재 료	중 식	3,300 X 12일 3,300 X 20일 3,300 X 24일	39,600 66,000 79,200	
간 식	오전, 오후	700 X 12일 700 X 20일 700 X 24일	8,400 14,000 16,800	
이. 미용	이.미용 이용	개별비용및 무료봉사		
병원비, 약제비	병원, 약국 이용	개별 비용		

◆ 이용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 이용금액의 15%, 9%, 6% 비급여금액)

◇ 본인부담금 합계 (이용금액+식재료) (15%인경우)

이용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일	209,190	193,770	178,920	174,030	169,080	101,450
	289,190	273,770	258,920	254,030	249,080	149,450
24일	251,030	232,520	214,700	208,840	202,900	
	347,030	328,520	310,700	304,840	298,900	

◇ 본인부담금 합계 (이용금액+식재료) (9%인경우)

이용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일	125,510	116,260	107,350	104,420	101,450	60,870
	205,510	196,260	187,350	184,420	181,450	108,870
24일	150,620	139,510	128,820	125,300	121,740	
	246,620	235,510	224,820	221,300	217,740	

◇ 본인부담금 합계 (이용금액+식재료) (6%인경우)

이용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일	83,680	77,510	71,570	69,610	67,630	40,580
	163,680	157,510	151,570	149,610	147,630	88,580
24일	100,410	93,010	85,880	83,530	81,160	
	196,410	189,010	181,880	179,530	177,160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Ⅱ 가입증서

증서번호 :2025-596519-000

■ 계약사항

계약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사업자번호	308-86-17902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853번길 37-14		
공제기간	2026-12-14 ~ 2026-12-13	소급일자(전문인배상책임)	2025 12 14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시작일 00:00 ~ 공제기간 종료일 24:00입니다.

■ 피보험자 (피제금자)

시설명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시설유형	재가노인복지시설
소재지	(33122)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853번길 37-14		
특이사항			

■ 가입담보 / 금액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산출기초	공제기간	공제료
		1청구당	연간총 보상한도	자부담			
1	전문직업배상책임 -주야간보호(대인/대물)	100,000	100,000	500	25명	2025.12.14-2026.12.13	817,369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산출기초	공제기간	공제료
		1인당	1사고당	자부담			
1	시설소유(관리)자-주야간보호 (대인)	150,000	500,000	100	25명	2025.12.14-2026.12.13	546,756
2	시설소유(관리)자-주야간보호 (대물)	0	10,000	100	25명	2025.12.14-2026.12.13	51,123
3	가스-액화석유가스 취사용 (대인)	150,000	0	0	211.12㎡	2025.12.14-2026.12.13	15,000
4	가스-액화석유가스 취사용 (대물)	0	300,000	0	211.12㎡	2025.12.14-2026.12.13	0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산출기초	공제기간	공제료
		1인당	1사고당/연간 총 보상한도	자부담			
1	생산물-음식물 (대인)	30,000	100,000	300	5 억	2025.12.14-2026.12.13	40,807

■ 납입 공제료

납입일	납입액(원)	납입일	납입액(원)	납입일	납입액(원)	납입일	납입액(원)
2025-12-01	1,471,000						

■ 계약부가조건(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담보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입소시설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
□ 소급담보일자 : 공제 효력 개시일과 동일.전문직업배상 담보에 한합니다.
□ 보고연장기간 : 60일 (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전문직업배상 담보에 한합니다)
□ 공제계약은 '수급자 기준 증권'이므로 입소정원 또는 실입소자수(현원) 변동시 반드시 통보하여 변경 배서를 하여야 합니다.
□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 피공제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부담보
□ 어떠한 경우에도 전염병 또는 감염병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담보 이외 적용 특약 :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사이버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전염병 보장제외 특별약관

※ 본 청약서의 보장내용 및 부대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제회는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공제증서를 교부합니다.
*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25. 12. 0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 사 장 김 용 하 (이사장인)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II 가입증서

증서번호 : 2025-601383-000

■ 계약사항

계약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사업자번호	308-80-17902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수로853번길 37-14		
공제기간	2026-01-02 ~ 2027-01-02		
종사자 현원	80 명	피공제자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소급일자	2026-01-02		
특이사항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00 ~ 공제기간 말일 00:00입니다.

■ 가입담보 / 금액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공제기간	공제료(원)
		1사고당	연간 총 보상한도	자부담		
1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인)	30,000	30,000	100	2026.01.02~2027.01.02	1,467,700
2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5,000	10,000	100	2026.01.02~2027.01.02	
3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인)	150,000	150,000	0	2026.01.02~2027.01.02	
4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물)	5,000	10,000	0	2026.01.02~2027.01.02	

※ 돌봄업무 :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 사업

■ 적용약관

적용약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II 약관
추가 기재사항	□ 우리 공제계약은 청약 당시의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 공제료를 부과하며, 공제기간 중 추가 입사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공제료 추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 (또한 퇴사에 따른 환급도 없습니다)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 구역 : 대한민국(국내) □ 보고연장기간 적용 : 60일 □ 피공제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 피공제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부담보 □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입담보외 적용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석면 부보장 특별약관 전쟁 및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저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사이버 사건 보장제외 특별약관, 전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공제료

공제료	1,467,700 원	납입구분	일시납

***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26. 01. 0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 사 장 김 용 하 (이사장인)

보험증권

한화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국문)

계약 기본사항

증권번호	FA20253953685000	청약일	2025년 10월 15일		
계 약 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308-80-17902 33122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853번길 37-14 ********			#완전판매율	-본안정답매율 : 0. ※불완전판매율이 제기 등으로 해지
피보험자	한마음노인복지센터 308-80-17902				
보험기간	2025년 11월 10일 00:00시부터 2026년 11월 10일 00:00시까지 이 보험계약에 기재된 증권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개월 -일 개인정보모집경로(개척)	

※ 상기 서명이 계약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아닌 경우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회사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분납내역

위험유형	화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
화재	WON	350,000,000	21,900	KRW 21,900
합계	WON	350,000,000	21,900	KRW 21,900

납입유형	납입회차	납입비율	납입예정일	화폐	보험료	원화환산보험료
일시납	1회차	100%	2025-11-10	WON	21,900	KRW 21,900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고객상담센터 (상담 및 문의) 1566-8000 영업부(점) 대구GA지점 053-654-5341

영업담당자 보험대리점 : GAK-참사랑보험대리점 이희석 010-2818-1306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나 채 범

발행일 2025.10.24